

9. 地方稅法中 改正法律(案) 立法豫告

內務部公告 第1994-21號 1994. 8. 4

1. 개정이유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를 앞두고 지방재정확충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1994년말로써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지방세 감면규정을 조정하고, 어려운 여건에 처한 농어민 지원과 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세제지원을 확대하며, 경제사회 여건의 변화로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현행 세제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기타 현행세제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현행 총칙의 규정중 조문체계상 맞지 않는 규정을 재정리하여 법체계를 정비하고 미비점을 보완함.

- (1) 현재 각 세목별로 규정하고 있는 천재 등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취득세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총칙에서 통합 규정하여 법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감면세목도 모든 세목으로 확대함.
- (2) 천재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방세법상의 각종 신고·신청·청구등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납세자의 청구권 행사를 보호함.
- (3) 지방세 조세채권 행사에 있어 적용기준시점이 되는 지방세 납세의무 성립 및 확정시기를 명문화하고 이를 기준으로 지방세 부과권의 제척기간, 징수권의 소멸시효 규정등을 정리함.
- (4) 현재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 이후에 설정된 전세권·질권·저당권보다

지방세가 우선하도록 한 규정을 국세의 예에 따라 법정기일제도를 도입하여 완
화함으로써 선의의 채권자의 권익보호를 도모함.

- (5) 현행 징수유예제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못하여 운영상 문제점이 있으므로 징수유
예를 고지유예, 분할고지, 납기한연장, 체납처분유예로 그 구분과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함.

나. 현행 지방세 감면규정의 적용시한이 1994년 말로써 만료되므로 지방세 비과세·감
면규정을 전면 재검토하여 공평과세원칙 및 지방재정확충 차원에서 축소조정하는
한편, 각 세목별로 규정되어 있는 감면규정을 법 제5장을 신설하여 통합하고 법체
계에 맞지 않는 비과세 규정도 정리하여 법체계를 정비·보완함.

다. 골프회원권등 현행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과 유사한 종합체육시설회원권을 취득세
과세물건에 추가하는 한편, 형식적인 취득으로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상속에 의한
취득을 다같은 무상취득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증여와의 조세형평을 유지하기 위
하여 과세대상으로 전환함.

라. 외국과의 통상마찰을 빚고 있는 고급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증과제도를 폐지하는 대
신 자동차세 세액 상한선을 폐지하여 응능과세를 도모함.

마. 경제사회 여건의 변화로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세율체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

(1) 면허세 세율의 종별구분중 제6종을 제5종으로 통폐합하여 영세자영업자를 지
원하는 한편, 세율체계를 단순화 함.

(2) '79년이후 장기간 세율을 조정하지 못한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세율을 군지역은
800원에서 1,000원, 기타 시 지역은 1,500에서, 1,800원, 인구 50만이상 시 및 자
치구 아닌 구가 설치된 시는 2,500원에서 3,000원, 인구 500만이상 시는 4,000원
에서 4,500원으로 조정함.

(3) 재산세의 기본세율 적용범위를 과표 1,000만원이하에서 1,200만원이하로 상향조
정하여 대다수 서민의 세부담이 경감되도록 함.

(4)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세율을 생수시판 허용 등 여건의 변화에 따라 음용
수는 톤당 10원에서 100원, 온천수는 톤당 10원에서 50원, 기타 음용수는 톤당
10원으로 조정함.

바. 현행 지방세 부과징수규정중 세제운영상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규정을 합리
적으로 개선·보완함.

- (1)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이동성이 강한 과세 물건인 건설기계를 등록세 과세 대상으로 전환하여 세제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함.
 - (2) 취득세·등록세의 비과세·과세면제 및 경감사유의 변동으로 비과세 또는 감면된 세액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한 때에 자진신고납부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자진신고납부의무 불이행시 가산세를 부과토록 함.
 - (3) 현재는 경주·마권세를 경마장소재지 도에만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장외발매소소재지 도에도 안분하여 납부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
 - (4) 자진신고납부제도인 국세인 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 소득할의 납부방법을 부과지제도에서 자진신고납부제도로 전환하여 소득발생시기와 주민세 징수시기의 불일치에서 오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현행 주민세 운영상 일부 문제점을 보완함.
 - (5) 조례에 위임되어 있는 주민세 균등할 및 사업소세 재산할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에 법정화하여 주민세 과세기준일은 8월 1일로, 납기는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하고, 사업소세 납기는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로 함.
 - (6) 자동차세 납부회수가 년 4회로 되어 있어 징수에 따르는 세무행정력 낭비가 많고 납세자의 불편도 있으므로 납부회수를 년2회(3월, 9월)로 함.
- 사. 시군통합으로 새로인 시지역에 편입되는 읍면지역 주민의 세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면허세 및 주민세 세율적용에 있어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은 군으로 보도록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함.
- 아. 자동차세를 3회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자동차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4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내무부장관(참조: 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과 주소